

환경감사의 개요(Ⅱ-1)

환경감사의 모델

국제환경규제와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SO-14000 시리즈의 하나인
환경감사에 대한 그 개요를
알아보고자 미국의 환경감사의 모델 실례를
연재한다.

(연재)

1. 슈퍼 하운드 법

1978년 미국 뉴욕주의 나이아가라 폴저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미국의 유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 사건은 핫가화학이란 지역기업이 화학폐기물을 1942년에서 52년 사이에 랏프기날이란 운하에 폐기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법률로는 합법적인 행위였으며, 그후 운하는 매립되었고 지역교육

위원회의 일로 양도되었으나 유해 폐기물에 의한 지하수나 토양오염의 문제가 표면화되고 지역주민의 건강조사에서도 유산, 사산의 발생률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은 소개되고 건물은 철거된 사건이다. 현재도 소송이 계속중인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환경보호청(EPA)이 유해폐기물 처리장의 조사에 들어갔고, 전 미국 3만 내지 5만개소에 유해 폐기물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박재주 / 본협회사무총장

영향을 받아 포괄적인 환경대처 보상책임법 (CERCLA)이라고 부르는 연방법이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이를 통칭하여 슈퍼하운드법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장등의 오염물질 시트(SITE)를 정화심이 되어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 관련업자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산업에 인פק트를 주었으며, 특히 1980년대 매수선의 기업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도 매수하고 레바이잇 이올(LBO)을 시초로 M&A (기업 매수, 합병) 붐 중에서 부동산 취급에 더욱 큰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는 슈퍼하운드법의 특징 중 부동산취급과 금융업계의 영향, 환경리스크에 대한 방위책, 환경감사의 방법이나 문제점등에 중심한다.

슈퍼하운드법은 랏푸기날 사건 이후로 카터 대통령(당시)의 서명으로 1980년에 제정된 이 법률의 목적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기인하고 오염시트의 정화비용을 유해물질의 처리에 관하여 모든자에게 부담시킨다. 또 슈퍼하운드라고 부르는 기금을 창설하여 잠재적 책임 당사자(Potential responsible Parties : PRP)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나 특정되더라도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배상 자격이 없는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하여 오염시트의 정화사업이나 개선조치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재원은 주로 석유세와 화학제품세로 하고 있다. 이 법은 5년간 시한입법이었으나 1986년에는 슈퍼하운드의 수정 재수권법(SARA)이 다시 6년간 시한 입법으로 제정되어 기금도 85억불로 증액시켰다. 1991년에는 슈퍼하운드법이 연장되었으며 EPA는

이 기금을 이용하여 정화사업에 착수하고 그 비용을 PRP에 청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혹시 PRP가 재판에서 인정하는 정화책임에 있어서는 그 비용이 3배의 금액이 징벌형 손해배상책임으로서 PRP에 부과 시킬수도 있다. 그러나 기금의 대부분이 소송비용으로 쓰이며 또한 시트의 정화비용도 평균 3000만 불을 초과 된다고도 하고 현재는 오염정화가 종료된 시트도 수십개소에 달하고 있다. 슈퍼하운드 지정지역의 정화 프로그램에 의한 비용은 기술 평가국(OTA)의 견적은 1000억불에서 1500억불을 상회한다. 슈퍼하운드법을 이해한데는 먼저 중요한것은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PRP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슈퍼하운드법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오염원인자의 법적책임을 추궁키위한 법이 아니고 정화비용의 부담자를 결정하는 법률에 기인한다.

PRP의 범위로서 다음의 4종류가 있다.

- 1) 현재의 시설 소유자, 관리자
- 2) 유해물질이 처리된 당시의 시설 소유자, 관리자
- 3) 유해물질 발생자
- 4) 유해물질 폐기장으로 운반한 수송업자

이에따라 PRP의 대상이 직접유해물질을 폐기, 처리한자에 한하지 않고 그후의 시설 소유자나 운반관계자에까지 파급된다. 부동산의 구입이나 M&B의 목적으로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의 정화비용의 부담을 강하게하는 원인이 된다. 슈퍼하운드법의 조문은 시설의 소유자(OWNER) 또는 관리자(OPERATION)를 PRP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오염과의 직

접관계를 부정하더라도 오염이 되어있는 토지나 시설을 취득한것에 대해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형태가 주식매입, 자산매입에 따라 슈퍼하운드법의 책임은 매입한 사람에게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 슈퍼하운드법의 3가지 특색
- 1) 엄격한 책임주의(Strict Liability)
 - 2) 연대 책임주의(Joint and Several Liability)
 - 3) 소급 책임주의(Retroactive Liability)

1. 엄격주의는 가해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불법행위책임원칙의 하나로 일종의 무과실 책임주의로 본다. 슈퍼하운드 법에서는 단지 PRP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정화책임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슈퍼하운드법의 엄격책임은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의 정화비용에 한정되고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되지 않는다.

2 연대책임주의는 PRP의 하나로 배상책임자가 되는 동시에 개별적으로 한 책임 당사자에게 손해액의 전액을 청구한다는 법리에 따라서 자기의 부담분 이상을 변제한 당사자는 그 비용을 다른 공동 책임자에 대하여도 배상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복수기업이 이용하는 유해폐기물처리장이 원인인된 인근의 토양,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EPA가 행한 오염정화작업의 비용전액을 A사에만 청구했을경우 그 A사의 유해폐기물의 책임할당이 1%라도 그 비용전액을 단독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동사는 다른 공동 책임자에게 책임분담액을 같이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소급책임주의는 소급책임에 따라서 현재의 시설의 소유자인데도 과거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도 소급 추궁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또 법률에 따라서 책임을 추궁 받는다.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원인의 대부분은 유해물질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토양에 폐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현재와 같이 엄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과거의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더라도 현행의 법규에 따라서 PRP로서 인정되면 그것을 모면할 수 없다고 엄하게 다루고 있다.

(2) 슈퍼하운드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범위

슈퍼하운드법에 의한 PRP가 부담하고 배상책임액은 최고 5000만 불에 한하고 있다. 또 오염정화비용 이외에도 대처비용(Response Costs)으로서 이하의 비용부담이 청구된다.

- 1) 미국정부의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 2) 미국정부에서 실시하고 하는 오염방출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요하는 비용
- 3) 유해폐기물처리장의 오염물질 확산방지 비용

오염정화책임을 면하고 항변은 유해물질의 방출 또는 원인이 다음 네가지로 되어 있다.

- 1) 불가항력
- 2) 전쟁
- 3) 종업원 또는 대리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작위 및 부작위
- 4) 선의의 부동산 매입자(Innocent Purchaser)

5) 선의의 구입자의 항변(Innocent Landowner's Depense)

오염된 부동산인것을 모르고 구입하여 그 자산액을 초과한 수10억 원이 넘는 정화 책임이 발생하는 엄격책임을 완화할 목적으로 1986년에 제정된 슈퍼하운드법 수정 재수건법(SARA)는 “선의의 구입자의 항변”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부동산 취득자나 은행등의 금융기관이 환경오염배상리스크에 대하여 선의의 구입자 또는 소유자의 항변을 주장할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그 항변의 조건으로 오염이 완전히 제3자행위에 의하고 또 제3자가 완전히 소유자와 무관할 항변의 기본은 사는쪽이 구입예정 또는 시트가 오염되었음을 알고 있는데 대한 부동산 가격의 조정에 의한 이익을 얻는 반면 정화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취급되지 않고 그러나 사는 쪽이 그 시설의 환경사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입전 여러가지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면 “선의의 구입자”로 인정되어 이 항변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항변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들은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최상의 수단이 환경감사이다. 다만 오염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모면 할 수 없다. 또 재판소가 현재의 소유자가 구입할 당시의 토지의 오염을 인식하였는지, 충분히 예측한 입장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1) 토지소유자의 특수한 지식과 경험
- 2) 구입가격과 오염되지 않은것으로 평가된 재산의 가치
- 3) 재산에 관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합리적으로 확인된 정보

4) 오염의 존재와 보는 시각의 명백성

5) 적절한 조사에의한 오염발견의 가능성

재판소가 이들의 조건에 따라 판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의 종류가 상업물건인지 일반물건인지에 따른 유산상속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게 된다고 한다. 상업물건의 취급에서는 첫째로 엄한 기준이 적용되며 다만, 재판소가 선의의 구입자의 항변을 인정한 판례를 보고 앞에 말한 다섯가지의 판단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릴지는 확실치 않다.

환경감사의 문제점

부동산 취득 기업매수 또는 금융기관의 용자에 관한 환경감사는 준수성감사(Compliance Audit)와 비교하여 비지니스 리스크, 특히 배상책임 리스크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슈퍼하운드법에 대한 정화책임은 기업의 존속을 좌우하는 리스크 이므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감사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적절치 않은 조사가 되고 만다. 그러나 환경리스크 어세스먼트는 감사인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내포되므로 환경리스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분석, 평가되는 리스크인지, 어느정도에서 안전 할것인지는 명확한 선을 긋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잠재적 배상 리스크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가끔 인용되는 표현으로 How Clean is clear이란 말이 있지만 오염된 토지나 지하수의 정화기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있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조사비용과 잠재적 배상 리스크 사감의 비용효

과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개 타당한 레벨의 보증을 얻게 되는 최저의 조사비용을 들여야 하는지도 결정하게 되며 특히 파는 쪽이 환경감사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환경감사를 실시 할것에서부터 새로운 리스크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1) 감사결과에 따라 오염을 변경했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저하된다.
- 2) 오염의 발각에 따라 환경관청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고 기업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나올 우려가 있다.
- 3) 중대한 오염을 발견하면 그 정화 의무가 발생한다.
- 4) 잠재적인 환경문제를 발견하면서 그 상태를 방치하면 뒤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 중과실 또는 악의가 있었다고 해서 중변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면 회사 중역이나 종업원이 형사 책임을 받게 되는 리스크가 생긴다.
- 5) 동일시설에 있는 환경감사와도 매각하기전에 파는 쪽이 행하는 환경감사와 부동산 매입전에 사는 쪽이 행하는 감사에는 조사범위와 리스크 평가가 다를수가 있다. 조사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의 가부가 크게 좌우되므로 감사의 중립성을 유지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와같은 문제를 가지고 환경감사를 실시하는 데도 더욱 중요한 점은 어떤 목적에서 어느정도의 환경감사를 실시하는가 또 예상되는 환경감사결과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이들 환경감사상의 리스크나 문

제점은 부동산매매나 M&A의 취급에 한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행하는 준수성 감사에 해당된다. 환경감사를 행하지 않는 쪽이 결과적으로 기업리스크를 적게 하는 경우도 있다.

2 국제 상공회의소의 제안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파일(International Panel Climate: IPCC 1990)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인간 활동기원의 온실효과가스 배출은 60%이상 삭감 시킬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총량규제는 각국 기업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간의 체결한 각서와 별도로 개개의 기업이 각기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 하나의 사안이 파리에 본부를 두고 세계중의 기업에 대해 다국간의 기업문제의 지침을 받고있는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제창하는 환경감사라고 한다. 한마로 환경감사라 해도 그생각을 목표로 하는데는 꼭 하나만은 아니다. 환경감사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달해 왔다고 하던가 그 감사를 이용하는 기업, 조직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계 헌장"중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감사와 "ICC의 효과적인 환경감사의 방법"의 관계를 보면서 그 고안과 방법을 소개한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계 헌장

1991년 4월 "환경관리에 관한 제 2회 세계산업회의, Second World In-

dustry Conference on Environmental Management; WICEM II"가 화란의 로텔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기업, 정부 NGO의 관계자가 환경에 배려한 경영의 여러가지 의제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리고 "최선의 경영이란 환경중시의 경영이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는 공통의 목표이다"라는 두가지 바탕에서 "지속적인 발전의 산업계 헌장", "로테르담 헌장"이 채택 되었다. 이 헌장의 기원이 된것은 1990년 5월에 유럽의 비즈니스 리더가 벨겐에 모여 "공통의 미래를 위한 협동계획, Action for Common future in map 1990"에 관한 토의에서 만들어 졌다.

벨겐의 회의에서는 1987년에 제출된 불란드위원회의 보고서의 주제였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재검토 되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작성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계 활동계획 의사록, Industry Agenda for Action」을 기초로 ICC가 유럽, 미국, 일본의 참가기업과 단체로 부터 지지를 얻어 작성한 것이 로텔담 헌장이다. 이 헌장의 서문에서는 "장래 세대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오늘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헌장의 기본 철학을 명시하고 있는 "경제성장이 있으므로서 환경보호를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를 인류의 목표와 발란스를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산업헌장은 선진 공업국의 리더가 환경 전략의 최대공약수적 요소로 추출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헌장은 각 기업이 어느정도 헌장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외부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즉 환경감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것은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ICC의 가이드 북에 설명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산업계의 현장

1) 기업에 있어서의 우선적인 배려

환경관리를 최우선되는 사항의 하나로 지속적인 발전의 결정요인으로서 인식할 것, 환경상 문제가 없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을 행할 방침 계획, 실천방법을 확립할 것.

2) 통합적 관리

위의 방침계획 실천방법을 여러 사업부문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리요소로 취급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통합할 것.

3) 개선 프로세스

법규제를 출발점으로 한 위의 기술개발, 과학적 지식, 소비자 니즈 사회의 기대를 고려에 넣어 기업으로서의 방침, 계획, 환경시책의 개선을 계속 할 것, 단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기준을 국제활동면에서도 같이 적용할 것.

4) 종업원 교육

환경면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에 종사하도록 종업원에 교육, 훈련, 동기를 부여 할 것.

5) 사전평가

새로운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또 시설을 철거한 용지에서 철퇴하기전에 환경영향을 평가할 것.

6) 제품 및 서비스

환경에의 부당한 영향없이 통상의도되는 용도에 있어서 안전하고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소비점에서 효율적이고 회수, 재이용, 또는 안

전한 처분이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것.

7) 소비자에 대한 조언

제품의 안전한 취급, 운반, 보관, 처분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업자, 일반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적당한 경우는 교육을 할 것.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도 같은 배려를 할 것.

8) 시설과 조업

에너지와 원재료의 효율적 사용, 재생가능 자원의 지속적 이용, 환경에 악영향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잔류 폐기물의 안전한 책임있는 처분을 고려하여 시설을 개발, 설계, 운전한다.

9) 연구

사업에 관련한 원료, 제품, 생산 공정, 배출물,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 또는 지원한다.

10) 예방책

심각하든지 비가역적인 환경의 악화를 예방하게끔 제품, 서비스의 생산, 판매, 사용방법이나 사업활동을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따라 수행할 것.

11) 청부업자와 납품업자

기업의 청부업자는 그들의 업무 방법을 당해 기업의 것과 합치하는 모양으로 개선하도록 권장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 요구를 하여 청부업자에 의한 원칙을 채용하도록 촉진한다. 납품업자에게도 이 원칙을 보다 폭 넓게 채용되도록 촉구시킨다.

12) 긴급시의 준비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지역국경을 넘어서의 영향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긴급 대응 준비계획

을 각종의 긴급 서비스 조직, 관계 당국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작성 유지 시킬 것.

13) 기술이전

산업계와 공적부분을 통하여 환경면에서 불태 건전한 기술과 관리방법의 이전에 공헌 할 것.

14) 공동노력에 공헌

공공 정책의 책정에 기여하고 환경에 대한 의식과 환경보호를 증진시키는 산업계, 정부 또는 정부간의 계획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공급 할 것.

15) 현안에대한 개방적 자세

종업원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진 조언, 제품, 폐기물이나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영향 월경적 또는 지구규모의 의미를 가진 것에 대한 여러 현안들을 고려하여 대응하고 개방적 자세와 대화를 촉진 시킬 것.

16) 준수와 보고

환경대책면에서 수행사항을 측정 할 것. 회사의 규정, 법적 규제 및 이 원칙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면의 평가를 할 것. 주주, 종업원, 당국 및 일반사람들의 적절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ICC의 환경감사 시스템

환경감사는 경영관리수법의 하나로서 기업의 환경배려의 경영상황을 평가하는 일련의 업무이다. 여기서 소개하고 환경감사의 모델을 여태까지 실시해온 감사의 사례(70년대 미국기업이 실시한것)를 들어 만든 것이다.

(1) 환경감사의 정의

환경감사란 (1) 경영에서 환경관리의 촉진 (2) 기업의 환경이념의 준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환경에 대한 노력을 조직, 경영, 시설등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경영수법이고 대개 평가 방법은 조직적, 실증적, 객관적인 것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환경에 관련한 건강, 안전, 제품관리의 측면등을 의미하고 있다. 그중에는 제품의 수송 안전성도 들어간다. 또 환경감사의 기법은 제조업의 공정관리와 농업, 서비스업, 행정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규모는 대기업 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2) 환경감사와 회계감사의 차이점

환경감사와 회계감사는 법제의 준수사항의 파악등 공통점이 많지만 그 목적, 이용방법등 상이점도 많다. 환경감사와 회계감사의 본질적인 상이는 환경감사에는 회계감사와 같이 국가간 공적기관에 의한 공인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많은 나라에서 인정한 감사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와 다른점을 예로들면 회계감사의 실시는 법률로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증명이다. 외부의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되는 외부감사 방식이다. 공적으로 인정된 방법이다. 경영자는 재무회계 상황의 파악이 된다. 환경감사는 실시하는 기간,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감사의 목적은 경영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다.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내부 감사 방식이다. 특히 결정된 방법은 없다. 경영자는 자사의 환경관계의 대응을 파악하게 된다.

(3) 환경관리의 한 수단으로의 환경감사

경영관리가 환경면, 건강면, 안전면에서 잘된 기업이면 환경감사는 환경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여러가지 경영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조직에 반영하므로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환경관리 시스템은 다 음점을 고려하여 구축된다.

지방, 지역, 국가, 국제적인 환경법 및 규제의 준거, 조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기업의 이념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확립과 외부의 발표, 환경리스크의 발견과 관리, 환경리스크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자원의 배분등이다.

(4) 환경관리 시스템의 흐름

1. 계획—환경관리목표와 그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골조를 구축하고 목표를 달성하여 전략의 개발 전략을 수행하기위한 경영자원의 배분과 방향성의 결정과 이념을 창출한다.

2. 조직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구조의 확립, 역할, 책임, 권한 등의 명확화, 조직화에 따라 경영자원의 유효이용이 되는 기반을 확립한다.

3. 실시—실시하게되는 계획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재의 계획을 수정한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의 결과가 좌우된다.

4. 평가제어—결과를 평가하여 문제의 분석결과를 시스템 개선에 반영한다.

5. 환경감사를 도입하는 메리트
환경감사를 도입하는 메리트는 환경기준을 지키는 것만이 아닌 잠재적인 환경리스크를 회피하게 된다. 그외 메리트로서는

1) 경영자, 관리 책임자로서는 환경감사를 통하여 기업의 환경책임에 대한 노력을 알게 된다.

2) 중간관리자라도 환경관리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서 다른 기업의 상황과 자사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3) 시설관리자에 있어서는 환경대책의 제수속에 대한 이해와 법적도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파악된다.

4)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억제할 수 있다.

5) 환경감사의 목표와 기업의 이익

환경감사의 목표는 그것을 달성했을 때 감사를 받는 기업에서 이익이 되도록 설정한다. 그중에도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의 방법이나 사양이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어야 한다. 감사계획의 일환의 목표는

- 환경관리가 법적으로 준거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
- 중간관리자에 대해서 확증을 제공할 것
- 시설관리를 환경관리 업무면에서 지원할 것
- 일반 종업원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향상 시킬 것
- 환경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 시킬 것
-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향상 시킬 것
- 잠재적인 손해배상 책임에서 기업을 미연에 지킬 것

- 자원을 유효이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 것 등이다.

6. 감사의 진화과정

환경감사계획은 초기단계에는 시설등의 문제점을 열거하지만 서서히 법규제에 대응과 발전시켜 환경을 존중한 경영관리평가를 하게끔 발전시켜 나간다. 이와같이 기업경영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경영자는 안심하고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7. 효과적인 환경감사계획의 작성

감사계획을 효과적으로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지지가 요건이다. 이때까지 도입에 성공한 사례로서

- 관리자들의 확실한 지지, 또한 경영층의 지지
- 관리층에서 감사계획이 관리상 유효한 수단이라고 승인 될 것
- 각종 관리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어 보다 공유될 것
- 역할분담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히 규정될 것
- 현장에서 관리방법의 결과에 대하여 반영되고 시스템이 준비될 것
- 현장에서 명확한 운영시스템과 규범이 있을 것
- 계획운영자는 책임자이고 신뢰도있는 인물일 것
- 기업내에 있는 기존의 시스템과 정합성이 있는 계획일 것 등이다.

8. 경영진의 동의와 지지

환경감사계획의 도입의 중요점으로서 경영진의 동의와 지지는 결격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내부 감사를 중요시하는 환경감사계획은 경영층의 지지를 표명하는데 따라서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

현 할수 있다. 또 감사하는 측과 감사받는 측의 정신적인 공감대 중요한 과제이다. 현장의 운전자들이 외부사람에게 체크당하는데 기분이 안좋은 것은 당연하다. 현장에서는 감사받는데 있어서 직무를 침해 받는다고 느껴 긴장감을 가지고 외부자에도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상호관계는 중역과 중간관리층이 감사도입운영에 이해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장에서 협력과 이해는 경영관리의 향상에 기여한다. 환경책임에 대한 경영자나 임원외의 위치에서는 최근에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환경책임은 직접 경영진등 상부에 있다"는 규제가 있다. 시설들이 규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상부의 책임을 추궁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환경관리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여 평소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환경감사에서 처음으로 정보를 입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 환경정책선언을 명문화 한다.
- 년차보고회, 주주총회, 임원회에서 환경정책지지를 표명한다.
- 임금체계에서 환경공헌도를 가미한다.
- 환경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한다.
- 감사에 경영차원을 적극적으로 배분한다.
- 감사팀이 현장이나 기록에 참여 배려한다.
- 감사시스템에 경영을 관여한다.
- 감사결과에 따라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차원의 배

분을 고려한다.

- 문제점을 경영층에서 접수한다.

(10) 감사의 범위

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경영층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데 중요한 요점이다. 마구잡이 감사는 경영층이 염려한다. 그래서 범위를 한정시켜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위해서는 대상범위, 대상조직, 정보원, 감사의 방법, 수행범위, 대상 중 점검항목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감사의 대상

어떠한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가가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누군가가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층, 법무부분, 임원회, 중간관리부분, 시설관리자등 감사정보 이용자들이다. 환경감사의 대상은 그들의 기업의 환경관리기준의 준수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많지만 특별한 감사인을 사용하게되면 관리개선도의 평가, 환경영향을 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위한 조업, 시설관리 시스템이 장래적으로 조례등에 준거시키는 것의 평가, 관리의 시설, 운영등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의 평가등을 하게된다.

2) 감사대상의 범위의 선정방법

감사대상을 선정하면, 다음에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위 설정으로는 지리적, 항목별, 사업부문단위, 시간단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지리적인 범위는 환경감사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될수 있는 데로 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초에는 관리하기 쉬운 장소부터 시작하여 감사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대상범위를 넓힌다. 감사대상지역이 문화, 언어가 다를

경우 계획의 설계, 실시에는 많은 노력과 자금을 필요로한다. 항목별로는 감사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 많은 기업에서는 공해방지, 종업원의 건강, 전문가의 안전이란 항목이 채택된다. 이것은 환경감사대상이 되는 항목의 일부고 또 제품의 안전성, 품질의 보증, 종업원의 교육, 물유관련의 안전성, 방사성 물질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이다. 대상으로 하는 항목의 선정기준은 감사정보의 이용자의 견해에 따라 좌우된다.

감사항목이 선정되면 시설시찰이 우선되어 각 방면으로 연락된다. 이에 따라 감사대상시설의 관리자와 감사인 간에 원활한 대화가 확보되어야 한다. 감사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유의점으로서 첫째 감사대상으로 하는 사업부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상이 되는 것은 제조부분, 연구부분, 창고, 직접 터미널, 판매사무소, 수리센터, 계열기업의 제조부분, 판매부분, 라이선스 폐쇄된 공장시설, 불필요한 부동산 등이며, 이것들에 환경리스크는 잠재한다. 감사의 계획을 작성하는 사람은 큰 성과를 기대하고 대상을 찾는 배려가 필요하다. 감사대상을 선정하는데는 그 선정과정의 기록을 보존하고 다른 감사요소와 형평을 어떻게 경영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감사대상기간의 설정은 매회 같은 기간에 설정한다. 감사대상이 다를경우 기간의 설정은 다소 복잡하며 감사대상기간을 관리기록의 보관기간을 알기쉽게 해서 기록에서 관리상황까지의 경위등을 읽으면 유익한 정보원이 된다.

(3) 감사의 실시회수

감사를 빈번하게 하면 그 만큼 경비가 든다. 감사의 실시회수와 경영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감사 실시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 감사대상기간을 명확히 하는 방법(대개 시설에 대해 2년만에 실시하는 것등)
- 이미 추출 실시하는 방법
- 리스크가 높은 곳은 실시 빈도를 많이하는 방법(1-3년에 1회 또는 3-4년)
- 위험도별 배분방법(하이리스크 60%, 중정도 리스크 30%, 저정도 리스크 10% 비율)
-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기타 항목에는 빈도수를 줄인다.

감사실시 회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경영자가 어느정도 감사결과에 기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고, 환경관련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으면 빈번한 감사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파악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충분히 수집이 안되는 상황이면 감사회수를 빈번히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와 반대로 충분히 환경관리시스템이 기능을 발휘하면 빈번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4) 감사팀의 조직과 스태프

감사정보의 양과 질을 확보하는데도 환경감사 계획에 경영자원분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실시가 꽤도에 오르면 대상범위도 넓어지지만 이로인한 감사정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감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스태프의 인수능력, 외부 컨설턴트의 능력, 자금과 시간이다. 감사의 범위

를 너무 넓혀서 감사조직의 능력을 넘어선 경우 감사의 품질은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방어기 위해서는 제도 감사의 범위와 감사조직의 검토가 필요하다.

(5) 어프로치의 방법

감사의 어프로치 형태는 실전감사 중심형, 준수상황 입증형, 관리시스템 검증형으로 분류된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감사는 3가지 타입이 서로 이어져 실시되고 있다.

1) 독립성과 객관성의 유지

감사인은 감사에 의하여 발견한 사실을 충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전지시키는 방법은

- 감사인과 감사계획은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부서에서 공사간에 독립되어 있을 것
- 감사보고서의 제출처는 감사대상부문의 스태프를 활용한다.
- 감사팀을 편성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 둔다(원종업원, 배속가능인원 배제).

이외에도 감사인의 개인적인 자질(객관성과 성실성)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감사물질의 관리

감사의 각단계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지게끔 배려하여야 한다. 감사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엄격한 수속의 실시,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담당 책임자의 입회와 각 실시단계에서 기준에 의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3자에 대한 감사계획의 평가와 외부 컨설턴트의 도입에 의한 감사인 교육, 감사계획의 입안, 및 감사의 입회등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다.